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300
------	------

2023. 12. 2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10월 11일, 이종배 의원(찬성자 10명)

나. 회부일자 : 2023년 10월 23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 제6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3.12.19.)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이종배 의원)

1. 제안이유

- 시민의 문화향유는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시민의 권리임.
- 이에 청소년, 청년,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및 미혼남녀가 문화향유에 있어 소외되지 않도록 구체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향수 및 창의력증진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3조제4호).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주우철)

가.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안은 서울문화재단 업무에 있어 문화향수와 창의력 증진이 섬세하게 필요한 청소년, 청년, 미혼남녀, 장애인, 노인을 포괄적 범위인 시민과 별도로 명시하기 위하여 발의되었음.

나. 서울문화재단 업무(안 제3조)

- 서울문화재단은 시민의 자율적인 문화예술활동을 진작시켜 서울시민들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공연·시각·문학 장르 지원 뿐만 아니라 예술교육, 청년, 장애예술가들의 창작공간 운영 등 각종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동 조례안은 “시민의 문화향수 및 창의력 증진”이라는 서울문화재단 업무에 청소년, 청년, 미혼남녀, 장애인, 노인 등 문화에 대한 추가적인 배려가 필요한 구체적 대상을 별도로 명시하여 이들의 문화향유를 증진시키고자 함.

< 신·구조문 대비표 >

현행	개정안
제3조 (업무)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 (업무) ----- -----.

현행	개정안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u>시민</u> 의 문화향수 및 창의력 증진	4. <u>청소년, 청년, 미혼남녀, 장애인, 노인 등 시민</u> -----
5. · 6. (생략)	5. · 6. (현행과 같음)

- 서울문화재단의 업무에 적시되어 있는 시민의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16조¹⁾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이라고 할 수 있어 동 개정안이 별도로 명시한 대상과 그 범주가 중복된다고 볼 수 있음.
- 하지만 “주민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안과는 달리 조례입안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조례입안자는 그 조례제정의 목적, 수혜자의 상황, 예산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그에 합당하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권한이 있다.” 라는 판례<대법원 2007추 42>가 있음.
- 따라서 청소년, 청년, 미혼남녀, 장애인, 노인이 시민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에게 문화적 혜택을 추가로 부여하기 위해 별도로 적시하는 것은 판례가 명시하고 있듯 자치입법권을 자유롭게 보장받고 있다는 점에서 동 개정안은 법리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청소년, 청년, 미혼남녀, 장애인, 노인으로 시민의 대상을 열거하였다 할 수 있겠지만 ‘등’이라는 예시적 단어를 사용하였기에 현재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대상 일부를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되

1) 제16조(주민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므로 현행 조례에서 정한 대상을 축소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견해와,
「행정기본법」 제9조에서는 “행정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적시하고 있기에 청소년, 청년, 미혼남녀, 장애인, 노인이 시민의 범주에 있음에도 추가로 적시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견해가 상존하고 있음.

- 따라서 ‘시민’이라는 포괄적 범주의 정의 규정을 개정하기보다 추진하고자 하는 구체적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시민의 알권리와 법적 투명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 : 개정안에 명시한 청소년, 청년, 미혼남녀, 장애인, 노인 중 미혼 남녀의 경우 지원이 필요한 문화적 약자 혹은 사회적 약자로 특정해 정의하기에는 무리한 측면이 있는 것은 아닌지?
- 답변 : 사회적 합의가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V.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적위원 9명, 참석위원 9명, 참석위원 전원찬성)

VI. 소수의견 요지 : 「생략」

V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배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300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10월 12일
발 의 자: 이종배 의원(1명)
찬 성 자: 문성호, 박중화, 신동원,
옥재은, 윤영희, 이민석,
이병운, 이종태, 장태용,
허 훈 의원(10명)

1. 제안이유

- 시민의 문화향유는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시민의 권리임.
- 이에 청소년, 청년,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및 미혼남녀가 문화향유에 있어 소외되지 않도록 구체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향수 및 창의력증진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3조제4호).

3. 참고사항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타 : 신 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시민”을 “청소년, 청년, 미혼남녀, 장애인, 노인 등 시민”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 (업무)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 (업무)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u>시민</u> 의 문화향수 및 창의력 증진	4. <u>청소년, 청년, 미혼남녀, 장애 인, 노인 등 시민</u> ----- --
5. · 6. (생 략)	5. · 6. (현행과 같음)

문 서 번 호

2023101200000006

비 대 상 사 유 서

요 청 인 : 이종배 의원

담 당 : 오희선 과장
이정수 팀장
손제승 주무관

접 수 일 : 2023.10.12.

회 신 일 : 2023.10.13.

내용문의 : 02-2180-7954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목 차

1. 판단 근거
2.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 사 무 처
재정분석담당관
Seoul Metropolitan Council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업무)제4호의 시민을 청소년, 청년, 미혼남녀, 장애인, 노인 등 시민으로 구체화한 개정안으로 서울시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이정수
주 무 관	손제승
	☎ 02-2180-7954
	e-mail : smclt22@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시 첨부하지 않는 자료입니다.